

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지원

□ 사업개요

- 코로나19로 직업훈련이 중단된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에 준하는 비용을 지원

□ 지원대상

-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한 훈련생
 - *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중단 권고일 이후(2. 26.) 훈련과정 운영 중 연속하여 1개월 이상 과정이 중단된 훈련과정에 대해 지원
 - **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50조(훈련장려금의 지원)에 해당하는 훈련생에게 지원, 실업급여 수급 중인 훈련생은 제외

□ 지원내용

- 훈련생 1인당 월 12만원 / (최대) 2개월간

□ 신청방법

- 신청기간 : 2020. 4. 1. ~ 8. 10.
- 신청장소 : **군청 방문신청**
 - 훈련기관은 훈련생으로부터 관련 서류(통장 등)를 취합하여 군청에 일괄신청
- 제출서류 : 지원 신청서, 지원신청 명단, 개인정보처리동의서, 통장사본 등

※ 문의 :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공동체담당 (☎061-390-7467)